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83
----------	-----

2018. 4. 5. (목)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2018년 3월 27일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병천)

가. 제안이유

-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수요)과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총수: 3,135명 → 3,175명, +40명
-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개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공무원: 2,883명 → 2,908명, +25명(5급 이하)
 - 교육전문직원: 236명 → 251명, +15명(5급상당 이하)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광주)

- 본조례 개정안은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분과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 학교폭력예방, 교원치유지원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원 등 지역현안 및 교육행정 수요에 의해 일반직공무원 25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15명 등 총 40명 증원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3,175명이며, 이는 교육부의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인 3,183명 범위 내의 정원책정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3,135명”을 “3,1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2,892명”을 “2,917명”으로 하며, 제3호 “236명”을 “25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75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908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71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51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원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135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u>2,892명</u>(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u>236명</u> 	<p>제2조(정원의 총수) ----- ----- <u>3,175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2,917명</u> ----- 3. ----- ----- : <u>251명</u>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가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소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35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83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46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2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가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소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75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908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71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51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7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범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18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국가정책수요 및 지역현안 수요) 증원분 및 교육행정수요 반영
-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5424(2017.10.20.)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40명(일반 지방공무원 25명, 교육전문직원 15명) 인건비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 ④ 생략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산출기초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가. 일반직공무원	69,261,000원×25명=	1,731,525	865,763	1,792,129	1,854,854	1,919,774	6,432,520
나. 교육전문직원	112,447,000원×15명=	1,686,705	843,353	1,745,740	1,806,841	1,870,081	6,266,015

※ 2018년은 6개월분만 추계하고, 2018년 이후는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인상률 적용
다. 채용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입		1,709,116	3,537,869	3,661,695	3,789,855	12,698,535
보통교부금		1,709,116	3,537,869	3,661,695	3,789,855	12,698,535
세출		1,709,116	3,537,869	3,661,695	3,789,855	12,698,535
정규직인건비		1,709,116	3,537,869	3,661,695	3,789,855	12,698,535
재원조달		1,709,116	3,537,869	3,661,695	3,789,855	12,698,535
의존 재원	소계	1,709,116	3,537,869	3,661,695	3,789,855	12,698,535
	국고보조금					0
	보통교부금	1,709,116	3,537,869	3,661,695	3,789,855	12,698,535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계					0
	자체수입					0
지방채						0
기금						0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